

예산총칙

제 1조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.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95,849천원으로 한다.

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수입	110,420천원
* 상담지도사업수입	79,060천원
* 민간단체공모사업수입	31,360천원
② 사업외수입	26,171천원
* 전년도이월금	25,931천원
* 예수금및차입금	0천원
* 이자수입	150천원
* 기타수입	90천원
③ 위탁금및보조금	759,258천원
* 위탁금	747,808천원
* 보조금	11,450천원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	539,211천원
* 보수	337,974천원
* 수당	112,811천원
* 성과급	4,000천원
* 연금부담금 등	84,426천원
② 운영비	59,762천원
* 일반운영비	40,170천원
* 여비	2,080천원
* 업무추진비	7,880천원
* 자산취득비	9,632천원
③ 사업비	289,420천원
* 프로그램사업비	209,500천원
* 보조금사업비	11,450천원
* 민간위탁사업비	68,470천원
④ 사업외지출 및 기타	7,456천원
* 사업외지출	0천원
* 예비비	7,000천원
* 반환금	394천원
* 일반관리비	62천원

3) 2024년도 2차 추경 사업은 5개 분야, 35개 단위사업
(2024년도 기정 사업은 5개 분야, 35개 단위사업)

○ 따라서 2024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수입 895,849천원 / 지출 895,849천원)

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

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기정예산	2차 추경	증감	사유
세입 계	895,849	895,849	0	
사업수입	110,420	110,420	0	
사업외수입	26,171	26,171	0	
위탁금및보조금	759,258	759,258	0	
세출 계	895,849	895,849	0	
인건비	539,211	539,211	0	
운영비	55,292	59,762	4,470	- 운영비 증가로 인한 증액(4,470천원)
사업비	293,890	289,420	-4,470	- 상담사업 강사비 및 운영비 절감에 따른 예산조정(△4,470천원)
사업외지출및기타	7,456	7,456	0	